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시행규칙 제출 시기 조정(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실시기관으로 규정함

다. 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자살예방 노력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라. 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바. 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으로, “12월 31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을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법 제17조제4항제5호”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이란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 교육내용)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법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제10조의3(자살예방 교육실시 횟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제10조의2에서 정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살 예방교육은 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4(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법 제 17조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단, 보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단체·시설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5(자살예방 교육 결과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교육기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1항에 따른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 7. 1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 ----- ----- ----- ----- ----- ----- <u>자살예방시행계획</u> ----- ----- ----- 1월 31일 ----- -----.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 기관)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이나 단체를 말한다. 1. 2. (생 략)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생 략) <u><신 설></u>	제10조(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

③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이란 각 호의 기관이
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살예방 교육내용)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
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법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생
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신 설>

<신 설>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

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제10조의3(자살예방 교육 실시 횟

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

살예방 교육은 제10조의2에서

정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

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살 예방교육은 각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4(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법 제

17조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

담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시청

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

시 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자살예방교육 우

수 기관·단체·시설은 다음 연도

<신 설>

<신 설>

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5(자살예방 교육 결과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교육기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u><신 설></u>	<u>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u> <u>부장은 법 제17조의1항에 따</u> <u>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u> <u>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u> <u>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u> <u>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u>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u> <u>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91